

17. 環境影響評價法施行規則

總理令 第442號, 1993. 12. 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평가서초안열람부등의 비치)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공람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초안열람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체출서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공술신청서등) 영 제7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술신청서 및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평가대행자의 지정기준) 법 제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평가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청장은 평가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대행자의 지정사항변경신청)

①법 제11조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사무실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의 변경)

3. 평가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4. 기술능력의 변경

5. 평가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②평가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평가대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대행자의 지정등의 공고)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를 지정하거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행정처분기준)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지방환경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청문절차)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등) ①사업자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사업이 분할·시행되어 공사현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사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승인기관의 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을 준용한다.

②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처장관이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기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사업등)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항목은 별표 1에 규정된 분야별 환경영향 평가의 내용항목중 환경영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또는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중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통보시에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제시한 항목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별 조사내용·조사방법·조사주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는

소속기술인력으로 하여금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기간은 14일이내로 한다.

제16조(교육계획의 승인등) ① 환경공무원교육원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공무원교육원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명단을 당해 교

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환경공무원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평가대행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환경공무원교육원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결과 통보 및 보고) 환경공무원교육원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결과를 교육종료후 15일이내에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 환경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환경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제출의 협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행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평가대행자소속 기술요원의 현황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21조(교육경비) 환경공무원교육현장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평가 대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정관의 변경) 법 제30조제3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구정관의 대비표
4. 기타 참고서류

제23조(사업계획서등) ①협회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협회의 장은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할 경우의 수수료는 1만원으로, 변경지정신청을 할 경우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제2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평가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된 자는 제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지정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사무실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별표 1]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제2조 관련)

- | | |
|--------------|---------------------|
| 1. 자연환경분야 | 사. 악취 |
| 가. 기상 | 아. 전파장해 |
| 나. 지형·지질 | 자. 일조장해 |
| 다. 동·식물 | 차. 위락·경관 |
| 라. 해양환경 | 카. 위생·공중보건 |
| 마. 수리·수문 | 3. 사회·경제환경분야 |
| 2. 생활환경분야 | 가. 인구 |
| 가. 토지이용 | 나.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
| 나. 대기질 | 다. 산업 |
| 다. 수질(지표·지하) | 라. 공공시설 |
| 라. 토양 | 마. 교육 |
| 마. 폐기물 | 바. 교통 |
| 바. 소음·진동 | 사. 문화재 |

[별표 2]

평가대행자의 지정기준(제5조관련)

1. 기술능력

기술능력	대체가능 기술능력	
	대체경력	전공연구분야
가.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소음진동관리기술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술사 중 1인이상	○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 환경학 ○ 환경공학

기술능력	대체가능 기술능력	
	대체경력	전공연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연구분야의 연구관으로 8년 이상 종사한 자 ○ 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기사 1급 자격취득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종사한 자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환경분야의 기술사 1인 이상 (1) 토목분야 중 토질 및 기초, 토목 구조, 항만 및 해안, 수자원개발 (2) 국토개발분야 중 도시계획, 측지, 지적 (3) 농림분야 중 영림 (4) 해양분야 중 해양, 수산양식 (5) 산업응용분야 중 응용지질, 지구 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연구분야의 박사학위취득후 그 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자 ○ 전공연구분야의 연구관으로 8년 이상 종사한 자 ○ 기술능력란의 마. 자연환경분야의 기사 1급 자격취득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학 ○ 해양학 ○ 지질학 ○ 자원공학 ○ 식물학 ○ 동물학 ○ 미생물학 ○ 생태학 ○ 토목공학
다. 다음에 해당하는 생활환경분야의 기술사 1인 이상 (1) 기계분야 중 기계제작, 산업기계, 건설기계 (2) 화공 및 요업분야 중 공업화학, 고분자제품,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3) 토목분야 중 토질 및 기초, 토목 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연구분야의 박사학위취득후 그 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자 ○ 전공연구분야의 연구관으로 8년 이상 종사한 자 ○ 기술능력란의 바. 생활환경분야의 기사 1급 자격취득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종사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학 ○ 환경공학 ○ 기계공학 ○ 산업공학 ○ 토목공학 ○ 화학 ○ 화학공학 ○ 금속공학 ○ 농학 ○ 임학 ○ 보건학

기술능력	대체가능 기술능력	
	대체경력	전공연구분야
(4)건축분야중 건축구조, 건축기계 설비 (5)국토개발분야중 도시계획, 조 경, 측지, 지적 (6)해양분야중 해양 (7)환경분야중 대기관리, 수질관 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8)산업응용분야중 공장관리		<input type="radio"/> 약학 <input type="radio"/> 의학
라.대기환경기사1급, 수질환경기사 1급 및 소음진동 기사 1급 각 1 인 이상	<input type="radio"/> 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input type="radio"/> 환경학 <input type="radio"/> 환경공학
마.다음에 해당하는 자연환경분야의 기사1급 2인 이상 (1)토목분야중 토목 (2)광업자원분야중 광산 (3)국토개발분야중 조경, 측지, 지 적 (4)농림분야중 영림, 식물보호 (5)해양분야중 해양조사, 수산양 식, 어로 (6)산업응용분야중 기상, 응용지질	<input type="radio"/> 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input type="radio"/> 기상학 <input type="radio"/> 해양학 <input type="radio"/> 지질학 <input type="radio"/> 자원공학 <input type="radio"/> 식물학 <input type="radio"/> 동물학 <input type="radio"/> 미생물학 <input type="radio"/> 생태학 <input type="radio"/> 토목공학
바.다음에 해당하는 생활환경분야의 기사1급 2인 이상 (1)기계분야중 일반기계 (2)화공 및 요업분야중 화공, 공업 화학 (3)통신분야중 무선설비	<input type="radio"/> 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input type="radio"/> 환경학 <input type="radio"/> 환경공학 <input type="radio"/> 기계공학 <input type="radio"/> 산업공학 <input type="radio"/> 토목공학 <input type="radio"/> 화학

기술능력	대체가능 기술능력	
	대체경력	전공연구분야
(4) 항공분야중 항공		○ 화학공학
(5) 토목분야중 토목		○ 금속공학
(6) 건축분야중 건축		○ 농학
(7) 에너지분야중 원자력		○ 임학
(8) 환경분야중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보건학 ○ 약학 ○ 의학 ○ 수의학
사.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기사 1급 2인 이상	○ 전공연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 환경학 ○ 환경공학 ○ 고고학 ○ 경제학 ○ 지리학 ○ 조경학 ○ 통계학 ○ 경영학 ○ 도시계획학 ○ 교통학
(1) 정보처리분야중 정보처리		
(2) 국토개발분야중 도시계획		
(3) 안전관리분야중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4) 환경분야중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5) 교통분야중 교통		

비고 : 1인이 2종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시설 및 장비

실험기기 및 장비	사 무 실	실 험 실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및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장비	15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이상

- 비고 : 1. 실험기기·장비는 당해 실험기기·장비를 보유한 평가대행자 또는 측정대행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실험실은 실험기기·장비를 보유한 평가대행자 또는 측정대행자와 측정업무 전부에 관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3]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실험기기 및 장비	관련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법 제12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	지정취소			
(2)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	지정취소			
(3)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경우	법 제13조	지정취소			
(4)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13조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5)업무정지처분기간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법 제13조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6)지정받은 후 1년이내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3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7)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8)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법 제13조	경고 지정취소 경고 영업정지 경고	업무정지 1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6월 6월 6월
(가)지정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나)지정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					
(다)사무실 또는 실험실 면적이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라)1개월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마)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장비가 부족한 경우					

실험기기 및 장비	관련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바)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9)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불참하게 한 경우	법 제13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10)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11)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별표 4]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제14조제1항 관련)

조사 대상 사업	조사 기간
1. 영 별표 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중 다음 사업 (1) 영 별표 1의 나.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란의 (1)내지 (7)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영 별표 1의 다. 에너지개발란의 (3)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중 (가)의 사업, 동란의 (4)의 사업과 동란의 (5)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중 (가)의 사업 (3) 영 별표 1의 라. 항만건설란의 (1)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중 (가)·(나)및 (다)의 단서의 사업, 동란의 (2)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중 (가)·(나)및 (다)의 단서의 사업과 동란의 (3)의 사업	<input type="radio"/> 사업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후 최장 5년까지

조 사 대 상 사 업	조 사 기 간
(4)영 별표 1의 바. 수자원개발란의 (1)내지 (3)의 사업 (5)영 별표 1의 아. 공항의 건설란의 (1)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중 (가)의 사업 (6)영 별표 1의 차. 매립 및 개간사업란의 (1) 및 (2)의 사업 (7)영 별표 1의 카. 관광단지의 개발란의 (2) 및 (3)의 사업 (8)영 별표 1의 하. 특정지역의 개발란의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위의 (1)내지 (7)에 해당되는 사업 (9)영 별표 1의 거.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란의 (2)의 사업	
2.영 별표 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중 위의 1.에 규정된 사업외의 사업	○사업착공년도부터 공사완료년도까지

□ 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공포됨(1993. 6. 11. 법률 제4567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별 평가항목을 정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할 수 있는 평가대행자의 지정요건·지정절차 및 행정처분기준등을 규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자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인 평가항목을 동·식물, 수질등 총

23개 항목으로 정함(영 제2조 및 별표1).

- 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 지정요건, 그 지정절차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등을 정함(영 제5조 내지 제10조, 별표 1 및 별표 3).
- 다.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관리대장에 관한 서식을 정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1조).
- 라. 공사현장에서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에 준하도록 하고, 협의내용이행상황의 수시점검 등 협의내용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영 제13조).
- 마.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대상사업·평가항목 및 조사기간등을 정함(영 제14조 및 별표 4).
- 바.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소속기술인력이 받아야 할 교육에 관한 사항과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신청시의 수수료등을 정함(영 제15조 내지 제21조·제24조).

〈법제처 제공〉

몰래버린 쓰레기가 공해되어 내게온다